

만 달러가 초과되는 등록자는 매월 신고해야 한다. 50만 달러 초과 6백만 달러 이하인 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한다. 50만 달러 이하인 자는 연 단위로 신고한다. 분기 단위 신고의무자는 월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 단위 신고의무자는 분기 단위 또는 월 단위 신고가 가능하다.

3. 세금 포함 가격

HST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전에 조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tax-inclusive pricing)을 알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 소비자들은 HST 도입시 이러한 점이 반영되도록 요구해 왔으며, 하원 재정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이기도 하였다. 소비자가 구매시에는 상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역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James 백화점	
HST#34567234	
2:36 PM Apr 15, 97	
비누	\$5.00
빵	\$1.00
구매액계	\$6.00
HST	\$.75
청구금액	\$6.75

4. HST의 과세

1) 기본 내용

HST를 도입한 주에서 재화 용역 및 무

형동산을 소비·사용·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모든 등록자는 영세율(zero-rated) 또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HST 시행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급에 대해 HST를 징수할 의무를 진다. 시행지역내 주들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동일한 조건의 사업활동 여건을 제공한다. 공급지 과세원칙(place-of-supply rule)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납세의무의 이행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지 과세원칙은 시행지역내외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과세대상별 공급지의 구분에 대해 보기로 한다.

2) 유형동산의 공급

가) 판매용 유형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공급

유형동산을 HST 시행지역에서 수요자가 배달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제조된 것으로 본다.

<예 4-1>

Newfoundland(시행 주)에 있는 소매업자인 John이 스트레오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주는 공급지로 간주되고 John은 HST를 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예 4-2>

HST 미시행 지역의 주에 있는 부품제조업자가 New Brunswick(시행 주)에 있는 조립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New